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자율적 공정거래 위해 3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엄격한 법집행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하도급별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과징금 부과시 감경, 과거 3년간 누적별점 감점)기로 했으며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도 개정했다. [편집자 주]

##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 1) 제정 및 보급 이유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기로 했다.

### 2) 주요 내용

####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

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여야 함

②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협력업체 선정이란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협력업체 풀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하여야 함

3) 가이드라인 사용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공정위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관련 부처별 인센티브 부여 내용〉

부 처	사용시 인센티브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 과거 3년간 누적벌점 3점 감면
건교부, 조달청	• 물품구매 입찰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
산자부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
정통부, 중기청, 금감원	• 정책자금 지원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

※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기업들이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

2. 하도급법 관련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개선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하였다.

1) 범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예시〉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 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대표 조치유형(시정명령)에 대해 2점 부과	각 행위유형에 대해 2점씩 총 4점 부과

-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범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시 벌점 50% 가중

※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2)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누적벌점 감경 확대)

-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3점 감점

- 기타 기존 감점제도의 합리적 조정(우수업체 표창수상 : 2점→3점 등)

### 3. 기대 효과

- 1) 3개의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제정된 3개의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

여할 것이다.

- 3) 개정된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 4)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자율’과 ‘제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상식

### 음식 궁합 정말 따져가며 먹어야 할까?

서양 학자들 사이에도 음식궁합 (food combining)을 잘 따져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게 핵심이다. 즉, 고기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을 때는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화 효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분비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서 밥도 함께 먹으면 이 중 한 가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대학(UC Berkeley)의 마건(Sheldon Margen)박사는 “음식 궁합 이론은 굉장한 거짓말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거의 모든 음식은 여러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소화에는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소화체계는 여러 가지 성분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소화·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 궁합을 따져가며 따로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다른 음식과 섞어 먹어야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쉽다. 예를 들어, 과일에 많이 들어 있는 비타민C는 곡식에 함유된 철분의 섭취를 도와준다.

그러나 음식궁합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학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음식 궁합을 맞춰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맞춰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게 하버드 대학 하우(Percy Howe)박사의 조언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